

光州直轄市西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994年 7月

總務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 1994年 5月 25日
- 나. 提出者 : 光州直轄市 西區廳長
- 다. 回附日字 : 1994年 5月 26日
- 라. 上程日字 : 1994年 6月 21日
- 마. 開催回數 및 日數 : 1回 (94年 6月 21日)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總務課長 曹秉峻)

가. 提案事由

-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 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主要骨子

- 본조례 제2조 제5항중 "제1항내지 제4항의 공인은"을 "제1항내지 제5항의 공인은"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하며
- 제5항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증명등의 간단한 민원을 처리해주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상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별표5와 같이 "현장중개민원실"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임

3. 專門委員 檢討報告要旨

(專門委員 : 趙澤龍)

- 본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생활현장에서 호적등(초)본등 14개종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구청을 왕래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다수의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심사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檢討要旨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음

7. 少數意見要旨 : 없음